

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6. 11. 1

내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10. 22
- 나. 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기획감사실장)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0. 22
- 라. 상정 및 의결
  - 제5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임시회)
    -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1996.10.29
    -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1996.10.29

### 2. 제안설명요지 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#### 가. 제안사유

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.

#### 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(대통령령)
- 市기획 12200-652('96. 9. 6)지적관리 기구·정원 승인

※ 참고사항

1) 토지·건축물대장관리및민원창구통합일원화계획보고 -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

('94. 4. 8)에서 의결된 사항

2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(총정원의 책정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총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주요골자

-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지방지적6급 1명증원
- 구분청 정원을 423명에서 424명으로 함.

관 리 기 관 별	현 행	증 감	조 정
계	874명	1	875
구 분 청	423	1	424
의 회 사 무 국	21	.	21
보 건 소	95	.	95
동	335	.	335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황정근)

- 금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지적직증원은 지금까지 토지대장은 시·군·구 지적부서에서, 건축물대장은 시·구 건축부서 및 읍·면의 재무·산업부서에서 관장 하고 있어
-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의 열람·등본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관련정보의 분산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기능 미흡등으로
-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당기관 및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시간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대장의 별도관리로 공부관리시설·장비·인력등 중복소요로 국가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
-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(94.4.8)에서 부동산관리업무의 의결사항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시·군·구 지적과로 통합관리토록 하고 장기발전대책으로 지표(지적), 지상(건축물), 지하(전화, 전기, 가스,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)에 관한 정보의 집중관리로 필지중심의 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,
  - ① 부동산실명제의 확립으로 토지·건축물의 투기방지 기능
  - ②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창구의 일원화로 국민의 불편 부담해소
  - ③ 토지분할·합병·건축물 등기신청시 1회방문처리제 가능
  - ④ 민원서류 감축으로 국민부담 및 행정비용 절감
  - 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체계의 확립으로 각종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
  - ⑥ 토지·건축물등 부동산에 관한 세원탈루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
  - ⑦ 부동산에 관한 전산화의 부서별·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기능
  - ⑧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 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야기 방지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

- 토지·건축물에 대한 등기(관할지법등기소)업무는 민원창구가 이미 일원화 되었음에도 토지·건축물대장관리업무 등을 이제서야 일원화하고자 부동산관리계 기구신설을 위한 직원증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(답변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서 기존발급하고 있음에도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 조직만 방만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발급 및 관리에 있어 공부, 시설, 장비, 인력 등이 중복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판단되어 이를 해소코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를 일원화토록 결정하였다고 사료됨.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결정 했는데 구에서는 2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는 사유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4월에 부동산관리업무를 일원화 토록 결정하였으나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상호간의 시행시 타당성 검토와 업무협의를 장기간 거친 결과 구청에 96년9월에 통보왔기 때문에 조래 개정이 늦었음.</li> </ul>

5. 토 론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